중요 문서 무단 반출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출력물은 모니터링 됩니다.

(붙임1)

경 영 공 시

본 농(축)협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,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및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아 래

1. 공시사유 : 농업협동조합법 제145조제2호에 의한 조합감사위원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(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5호)

2. 공시내용

○ 대 상 : 감사 김○○외 1명

○ 경 위 : 임원의 품위유지 및 행동강령 기준 위반

○ 주요내용 : 감사 김○○ 견책, 감사 이○○('19.2.22퇴임 견책해당)

○ 수지에 미치는 영향 : 없음

2019년 4월 26일

진전농업협동조합장 (직인)

1438379884 8210150 감병+